

미래전략위원회운영지침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

제정 2023.11.24. 지침 제40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는 미래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경영진 정책자문을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약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관」 제13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심평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원장은 안건의 중요도 및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운영 시 안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위촉된 위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① 위원회의 활동 및 관리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반을 둔다. 운영지원반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미래발전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로 한다.

② 운영지원반은 위원회가 보다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에게 심사평가원의 경영현황, 주요 생산자료 및 회의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심사평가원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인이 공무원 또는 심사평가원의 직원(직제 외 상시 근로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

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운영지원반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